



01 서지 사항

국가 법원	일리노이주 항소법원 제 3 부	사건번호	3-02-0913
판결 일자	2003. 7. 9.	판결 결과	일부 파기, 일부 유지
원고 (피항소인)	카루스 케미컬 (Carus Chemical Company), 카루스 (Carus Corporation)		
피고 (항소인)	켈시퀘스트 (Calciquest, Inc.), 존 찰턴 (John Charlton)		
참조 법령	(판결문에 기재되지 않음)		
참조 판례	Callis, Papa, Jackstadt & Halloran, P.C. v. Norfolk & W. Ry., 195 Ill.2d 356, 366, 254 Ill.Dec. 707, 748 N.E.2d 153 (2001)		
영업비밀	상수도 부패 방지 화학약품 가열 처리 방식		
키워드 (Keyword)	영업비밀, 예비적 금지명령, 제품비교, 제재, 공개		

02 사건 개요

원고 회사는 상수도 부패 방지 화학약품을 제조하는 회사이고, 피고 회사는 원고 회사의 경쟁사이며, 피고 찰턴은 원고 회사에서 근무하다가 피고 회사로 이직한 자이다.

피고 찰턴은 피고 회사에 근무하면서 고객들에게 편지를 발송했는데, 피고 회사의 제품이 원고 회사의 제품과 화학 구성, 색층 분석 결과, 가열 처리 방식 등이 동일하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에 원고 회사는 피고들을 상대로 계약 위반 및 일리노이 영업비밀보호법 위반을 이유로 피고에 대하여 예비적 금지명령을 신청하였고, 법원은 이를 인용하였다.

그러나 원고 스스로 마이애미-데이드 지방에 제출한 입찰제안서에서 기존에 사용 중인 피고의 제품과 원고의 제품이 동일하다는 피고 찰턴의 편지를 첨부하여 제출한 것이 발견되었고, 피고들은 이를 이유로 예비적 금지명령 취소와 함께 원고 회사에 대한 제재를 신청하였으나 원심은 모두 기각하였다.

이에 피고들이 원심의 금지명령 취소 및 원고에 대한 제재 신청 기각 결정에 항소한 사건이다.

03 주요 쟁점

원 고	⇔	⇐	피 고
(판결문에 명확히 나타나지 않음)			원심은 예비적 금지명령 취소를 거부하면서 재량권을 남용했다. 원고에게 제재 명령을 내리지 않은 것은 재량권 남용이다.

04 판결 요지

예비적 금지 명령을 요청하는 당사자는 (1) 보호를 받을 필요가 있는 확정적인 권리; (2) 금지 명령이 없는 경우 회복 불가능한 손해가 발생할 위험성, (3) 다른 적절한 법적 구제책의 부재, (4) 본안 소송에서의 승소가능성을 입증해야 한다.

원고는 피고 찰턴의 편지를 사용할 수 있고 피고들은 예비적 금지명령에 의하여 그렇지 못하다면 이는 예비적 금지명령이 원고를 부적절하게 보호하고 있는 것이며 경쟁사들에 대해서는 비합리적인 경쟁 제한을 가한다. 따라서 예비적 금지명령은 해제되어야 한다.

예비적 금지명령에 의해 원고는 두 회사의 가열 처리 방법을 자유롭게 비교할 수 있는 반면 피고는 그렇지 못하므로, 이 사건 예비적 금지명령은 비합리적으로 경쟁을 제한하는 것이다. 따라서 예비적 금지명령은 취소되어야 한다.

제재 명령을 거부한 것은 원심의 재량에 해당하고, 준비서면에서 원고가 주장한 사실이 부적절하기는 했으나 합리적인 이유가 없었다고 판단할 수는 없다. 따라서 원고에 대한 제재 명령 신청은 기각한다.

05 Key Point

영업비밀 보유자가 스스로 공개한 정보의 경우에는 더 이상 영업비밀로 보호될 수 없다. 영업비밀 침해로 인하여 금지 명령을 받았다고 하더라도, 그 이후 영업비밀로서의 보호 요건을 충족하지 못할 경우 금지 명령이 취소된다는 점을 유의해야 한다.